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15 선고 2020가단5389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6. 23 선고 2021나61030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15 선고 2020가단538938 판결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 3.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

담당변호사 홍영호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맥

담당변호사 송진민

변 론 종 결 2021. 6. 1.

판 결 선 고 2021. 6. 15.

주 문

1.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. 9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- (1) E은 2014. 8. 28. F에게 ‘2015. 7. 31.까지 12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3억 원을 지급하겠다’고 약정하였다.
- (2) F은 E을 상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사망하였고, 망 F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, 2017. 12. 8. ‘E은 원고 A에게 638,429,999원, 원고 B, C에게 각 425,619,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. 8. 29.부터 2017. 12. 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이 선고되었다(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2205).
- (3) E은 2015. 9. 30. 피고에게 (주)G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 한다)의 보통주식 600주(이하 ‘이 사건 주식’이라 한다)를 증여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.
- (4) E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7, 1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항변 요지

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,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656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한 소외 회사의 2018. 12. 14.자 가압류이의신청서,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한 2019. 2. 21.자 결정문 및 원고들이 H, I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464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2019. 7. 24.자 소장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8. 12. 14.경, 2019. 2. 21.경 또는 2019. 7. 24.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, 그럼에도 원고들은 1년이 경과한 후인 2020. 9. 29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(1) 갑 제5호증의 1, 갑 제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① 원고들은 2018. 12. 5. 소외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(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620), 소외 회사가 2018. 12. 14. 위 가압류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(위 법원 2018카합50656), 위 가압류이의 신청서에 ‘E은 2016년 초 소외 회사의 보통주 1,8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, 2016. 9. 28. H에게 1,200주, “D”1)에게 600주를 각 양도하였다’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.

② 위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한 2019. 2. 21.자 결정문에, 원고들이 ‘E은 2016. 9.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을 H, “D”에게 모두 양도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’고 주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.

③ 원고들은 2019. 7. 24. H과 “I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(광주지방법원

2019가단524643), 위 사건의 소장 중 청구원인 부분에 위 ①항 기재 가압류이의 신청서 기재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.

(2) 그러나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. 9. 30. 체결되었음에도 위 가압류이의 신청서에는 E이 2016. 9. 28. “D”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600주를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,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소외 회사가 위 가압류이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소외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이 속해 있지 않은 2016. 1. 1.부터 2016. 12. 31.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던 사실, 위 명세서에 피고의 주식은 변동이 없고, “I”이 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, 위 (1)의 ①항 기재 “D”은 “I”의 오기이고, 원고들도 “D”과 “I”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여 위 가압류이의 사건과 H, “I”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위 (1)의 ②, ③항 각 기재와 같이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3)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, 위 (1)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(1) 기초사실에 의하면, E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이는 원고들 등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E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옥희

목 록

주식회사 G의 주주명부상 피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 중 일부로서 위 회사가
발행한 1주당 10,000원의 보통주식 600주. 끝.

1) 피고의 이름이다.